

# 안전보건관리 규정

기업명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제·개정일	2022.01.27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담당자	이정욱 매니저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양건열

# 안전보건관리 규정

## <총 칙>

### 제1장 통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또는 "산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 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의 정규직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3.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된 사업장 내에서 시운전, 운전 중 점검, 정비·보수 등의 작업을 할 때 운전부서에서 발급·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굴착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5. 도급사업: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정비·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을 말한다.

6. 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애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안전보건방침)

- ①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대표이사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회사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회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재해예방의무)

- ① 회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 규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4.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른 것
  5. 지속적으로 회사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 ②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경영조직에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생산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산안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대표이사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 제6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 ① 회사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며,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에 공유하여야 한다.

#### 제7조 (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 ① 회사는 제6조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등)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 제8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 제9조 (안전보건조직)

- ①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 ② 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직·직책에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회사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 제11조 (관리감독자)

회사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제 3장 작업장 안전관리

#### 제12조 (전기설비 안전)

- ① 회사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여 감쌀 것
- ② 회사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하여야한다.
  1.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 ④ 회사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 ⑥ 회사는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 ⑦ 회사는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 제13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① 회사에서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 **제1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 ① 회사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 **제15조 (작업중지)**

-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 ①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 **제17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 ① 회사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소방점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②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6.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제18조 (교통재해 예방)

모든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 (비상조치계획)

- ① 회사는 위험성평가 등에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시 각 부서 비상연락체계
  2.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3. 비상시 대피절차
  4.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5.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 제20조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비상연락체계는 회사 내부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 4장 작업장 보건관리

### 제21조 (근로자 건강진단)

-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 ② 근로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1항의 특수건강 및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 ⑥ 제5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⑦ 회사는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1. 건강진단기관
  - 2. 산업보건의
- ⑧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⑨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

- ①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 제23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 ① 회사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사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24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 ① 회사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 ③ 회사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만 한다.

### 제 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제25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 ① 회사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제 7장 보 칙

#### 제26조 (징계)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 **제27조 (변경절차)**

- ①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 (준수)**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 **제29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네이블 안전관리 조직표

